

제243회 거창군의회의 임시회  
(2019. 11. 1. ~ 11. 15.)

# 의원발의 조례안

(규칙 1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9-114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114
----------	----------

발의일자	2019. 10. .
발 의 자	박수자, 이홍희, 김향란,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김태경 의원 (인)

## 1. 제안 이유

- 가.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개선  
 나. 상위법에 명시된 의원 서류제출요구의 근거조항 신설

## 2. 주요내용

### 가.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56조의2, 제74조, 제79조, 제80조)

- 1)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2) 깃연 ⇒ 흡연
- 3) 자 ⇒ 사람
- 4)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 5) 주기가 있는 자 ⇒ 술에 취한 사람
- 6) 차별규정 삭제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입장제한

### 나. 서류제출요구 조항 신설(안 제67조의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10. 18. ~ 23.
    - 나) 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6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위촉의 해지를”을 “해촉을”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서류제출요구)**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서류제출요구의원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되, 그 이유와 연장된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깃연”을 “흡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기존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술에 취한 사람

제80조제4호 중 “깃연”을 “흡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6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⑤ (생략)                      ⑥ 위원장은 전문가에게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u>위촉의 해지</u>를 요청하여야 한다.                      1.~5.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u>기타</u>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p>	<p>제56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은 전문가에게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u>해촉</u>을 요청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p> <p>제67조의2(서류제출요구) ① <u>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안전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서류제출요구의원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되, 그 이유와 연장된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u></p> <p>③ <u>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u></p> <p>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u>그 밖의</u>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p>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깍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생략)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깍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삭 제>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관계법령

### □ 행안부 기획정비과제(한자어 정비)

대상	조문	정비방안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4. 음식물의 섭취와 <b>깍연</b>	깍연 ⇒흡연, 담배를 피우는 행위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4. 음식물의 섭취나 <b>깍연</b> 행위	

### □ 「국어기본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25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18. 12. 24.]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1.10.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시행일 2011.10.15]]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시행일 2011.10.15.]]